

1. 제정이유

공공의 편익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속국도 휴게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근거한 기존 관리체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안 제4조)
- 나. 휴게소를 운영하는 4가지 방식을 규정(안 제5조)
- 다. 시설운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정하고, 민자 방식의 경우에는
민자적격성 검토 및 타당성 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안 제6조)
- 라. 휴게소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과 관련 안전 기준을 규정(안 제7조)
- 마. 운영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등을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별도 협의
- 라. 기 타 : 전문,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1773호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훈령안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훈령을
붙임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4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게소”란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장시간의 연속주행으로 인한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 및 피로 해소, 자동차의 주유 및 정비,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교통시설, 지원 시설 등으로 구성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운영자”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

국도로공사”라 한다)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휴게소를 운영하거나 한국도로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휴게소를 설치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도로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고속국도의 휴게소에 적용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휴게소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휴게소의 설치와 배치에 관한 사항
3. 휴게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휴게소의 평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휴게소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휴게소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한국도로공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사업방식) 휴게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1. 직영방식: 한국도로공사가 당해 시설의 전부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

2. 임대방식: 한국도로공사가 당해 시설의 전부를 설치하고, 그 시설을 최대 10년(제8조 제3항에 따른 우수 시설운영자의 경우에는 최대 15년)의 범위 내에서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방식

3. 민자방식: 시설운영자가 당해 시설을 전부 설치하고, 그 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식

4. 혼합민자방식: 임대방식과 민자방식을 혼합하는 방식

제6조(시설운영자의 선정) ① 한국도로공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방식의 운영을 위해 시설운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모집공고, 사업설명회,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5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방식 대비 수익성 및 공공성 측면에서 유리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건설사업비, 운영수입 및 운영비용 등에 대한 예측·검증 등 타당성평가를 거쳐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7조(설치기준) ①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게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2. 교통시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 연료공급시설,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차 휴게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버티포트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 따른 버스환승센터 등

3. 지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②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 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휴게소에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과속방지시설
2. 속도제한표지
3. 노면요철포장
4. 점멸식 신호등
5. 감속유도 차선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③ 휴게소 간 간격은 도로의 기하구조 등을 고려하여 표준간격 50km,

최대간격 100km의 범위 내에서 휴게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소 간
간격이 25km를 넘는 경우에는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5조에
따라 양 휴게소 사이에 졸음쉼터 및 간이휴게소 등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④ 휴게소 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 제9조에
따라 본선 교통량, 휴게소의 이용률 및 혼잡률 등을 고려하여 소형차
주차면과 대형차 주차면을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주차면 수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 주차면 수 = 편측 설계교통량 × 이용률 × 혼잡률 ÷ 회전율
· 이용률(%) = 시설 이용차량 대수(대/일) / 본선교통량(대/일)
· 혼잡률(%) = 가장혼잡시간이용대수(대/시간) / 일이용대수(대/일)
· 회전율(회) = 1시간(시) / 평균주차시간(시)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서비스 향상 노력) ① 한국도로공사 및 시설운영자는 휴게소 이용자
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게소를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한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소가 성실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③ 한국도로공사는 제2항에 따른 시설운영자의 운영 현황 분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이용자 만족도 등 고객서비스 향상
2. 실내·외 청소, 화장실 청결, 누수, 폐기물 처리 등 위생 관리
3. 시설물 파손, 교통사고 예방, 화재예방, 조명등 상태 등 안전관리
4. 공정한 납품거래 및 상생협력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업무규정)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법」, 「한국도로공사법」 및 이 훈령을 준수하여 휴게소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휴게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점검 및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운영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계약 또는 사업협약의 체결을 말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